

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1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구미시결산검사위원 수당이 회기수당과 상이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상향조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“50,000원” 에서 “70,000원” 으로 2000년도부터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“50,000원” 에서 “70,000원” 으로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

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【별표】 중 일비 액수 “50,000원”을 “7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제13조(지급기준) 위원회 일비 또는 여비는 【별표】 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따른다.	제13조(지급기준) 위원회 일비 또는 여비는 【별표】 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따른다.												
【별표】	【별표】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 분</th><th>액 수</th></tr> <tr> <td>일 비</td>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50,000원</u></td></tr> <tr> <td>여 비</td><td>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</td></tr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<u>50,000원</u>	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 분</th><th>액 수</th></tr> <tr> <td>일 비</td>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70,000원</u></td></tr> <tr> <td>여 비</td><td>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</td></tr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<u>70,000원</u>	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
구 분	액 수												
일 비	<u>50,000원</u>												
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												
구 분	액 수												
일 비	<u>70,000원</u>												
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												